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	배포일시	2021. 1. 24.(월) / 총 4매(본문4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상황총괄대응과	• 과장 이두희, 사무관 엄수연 • ☎ (044) 201-4152, 4156	
	고용노동부	디지털노동대응 TF	• 과장 박상윤, 사무관 이상보 • ☎ (044) 202-7070, 7075	
	공정거래위원회	서비스업감시과	• 과장 홍형주, 사무관 김경원 • ☎ (044) 200-4499, 4508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

- 민관합동 조사단 등 점검 결과,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 -
- 택배기사의 실질적 업무부담 경감 위해 분류인력의 안정적 수급 필요 -
- 합동조사단·분류인력 숙련도 제고 및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 등 권고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, 1월 첫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

○ 1월 둘째 주에는 민·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택배현장의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점검의 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'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' 여부이며, 이 외에 고용·산재보험 가입, 심야배송 제한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다.

○ 민·관 합동조사단은 총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, 한 개조에 국토부, 고용부, 공정위, 민간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7인씩 구성하였다.

- 이 중 민간 전문가 3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택배노조 추천 전문가 1인, 택배사 추천 전문가 1인, 정부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였고, 전국 터미널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.

\* 1.1~1.21 기간 중 총 25개 터미널 점검(합동조사단 5개소, 국토부 자체 조사 20개소)

□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◇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 할 경우 별도 비용 지급 이행 중

다만,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되기까지는 시일 소요

-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였거나,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.
- 점검지 25개소 중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되어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(28%)였으며, 분류인력 투입되었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(48%),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개소(24%)였다.
-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 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되었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되어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.
-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으며,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라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적 작업시간이 소요되었다.
-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협소하여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.

- 배송물량이 적은 지방 또는 일부 택배 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짧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. 이러한 터미널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.

○ 현장인력 인터뷰 결과,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달랐으나 '22년 최저임금(9,160원) 이상인 시급 9,170 ~ 16,000원 수준이었으며,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#### ◇ 심야배송 제한,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적 합의 사항은 정상 이행

○ (심야배송)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22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4개 택배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21시 이후 시스템 차단을 통해 배송을 제한하고 있었으며,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있었다.

○ (사회보험) 현장 인터뷰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으며,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·산재보험 가입률은 90%를 상회하는 수준이다.(주요 4社 국토부 제출자료)

□ 점검 이후 민·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의 숙련도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,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○ 또한, 현장이 협소한 터미널의 경우에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**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**하고,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**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  
- 또한,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**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자동화 설비**를 통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택배사업자에게 **권고**하였으며, 이에 대해 택배사별로 **월별, 현장별 개선대책**을 마련토록하고 대책의 **이행상황**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

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엄수연 사무관, 이상보 사무관, 김경원 사무관  
(☎ 044-201-4156, 202-7075, 200-45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